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용 신청 서식

1.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신고서

2.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3.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공동사업자인 경우만 제출)

첨부서류: 지급희망월 1개월 급여대장(또는 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
지급희망월이란? 신청인이 최초로 지급받고자 하는 월('18.1월, '18.2월, '18.3월,.....)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7. 12. 29.>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국민연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자만 신청)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자리안정 자금 지원 신청
		현재 기준소득월액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	근로자 동의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보수월액	보수 변경 월	변경사유	변경 후 월평균보수		변경사유	
								고용보험	산재보험		
											[]에 []아니오
											[]에 []아니오
											[]에 []아니오
											[]에 []아니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요건

-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하락)된 사업장가입자만 가능(근로자의 동의 필요)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하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과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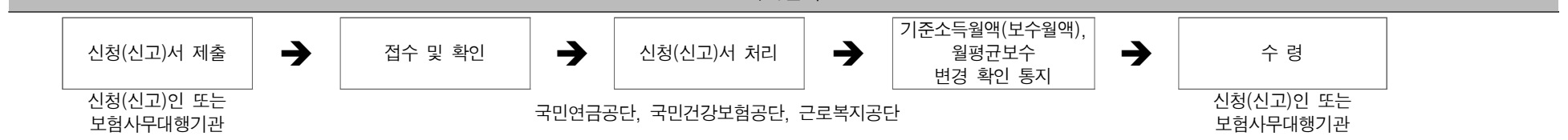
(뒷쪽)

제출(첨부)서류	국민연금 ①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②	1.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③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공통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①	1.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지급되고 있는 소득을 적습니다.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②	1. "변경 후 보수월액"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3.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5.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③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근로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수에서 제외 산정).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 그 외의 근로자 : 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2. 변경된 월평균보수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4.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④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백상지 80g/㎡)]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위 지원금은 아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됨을 알려 드리며, 요건 충족 시 국은 선 안의 체크표시에 **진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 사업장 요건	예	아니오
1.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가 평균 30인 미만입니다.		
2. 30인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이나 사업장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3. 전(전)년도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소득금액, 법인: 당기순이익)		
4.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이 아닙니다.		
5.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6.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7.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요건(반드시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신청대상 근로자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입니다.		
2. 신청대상 근로자는 모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4.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5.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① 근로자의 퇴사, 소정근로시간 및 보수인상 등 지원요건이나 사업장 소재지 등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이후 고용감소 시 고용유지 노력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 환수와 더불어 그 금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_____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 _____ (서명 또는 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일자리관리번호	처리기간	18일	
공통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	
			업종	업태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수령방법	직접수령 ☐ 4대 사회보험료 대납 ☐	※ 건설업 및 벌목업은 직접수령만 가능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금 결정 통지 방법	고지 방법 [] E-mail [] 우편수령 [] 휴대전화(SMS) 등	지급희망월 (YYYY,MM)			
	받는곳 (E-mail, 주소, 휴대전화)	지급희망일 (2회분 이후)		☐ 10일 ☐ 20일 ☐ 30일	

※ 지급희망월은 신청인이 최초로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최초신청 시 선택한 지원금 지급희망일(2회차 이후)은 이후 변경하지 못합니다.(직접수령 시만 지급희망일 선택)

※ 최초신청 이후 근로자 제외·변경사항 발생 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일용근로자 별도 작성)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입사일 (YYYY,MM,DD)	수습/감사· 단속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3월만수습 ☐ 감사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만수습 ☐ 감사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만수습 ☐ 감사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만수습 ☐ 감사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만수습 ☐ 감사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만수습 ☐ 감사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 구비서류: 1. 신청대상 근로자의 임금지급 내역(임금지급대장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1부

2.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필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면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필수) 유사사업 중복방지 등을 위해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사업(주)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지원내역 등이 공시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선택) 위 계좌를 4대 사회보험료 과납금 반환계좌로도 사용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공동사업자 현황

번호	성명	관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담당직원
확인사항

- ▶ 정보가 필요한 사유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주의 지원요건 해당 여부 판단
- ▶ 동의할 개인정보(이용 방법 : 해당 자료를 수집·처리하는 행정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른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금액)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신고 관련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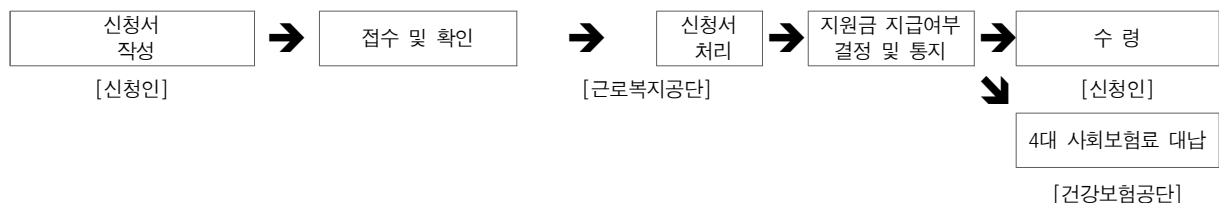
작성방법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고용보험관리번호’란에 해당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대표 및 대표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지급희망일(2회분 이후)’란은 2회차부터 매월 지급 받고자 하는 일자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 ‘월평균보수’란은 지급신청월이 속한 해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시고, 주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주 근무일수×일 소정 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정액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보수의 합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액급여: 기본급, 직급수당, 근속수당 등, 정액급여 제외: 연월차수당, 상여금, 야근수당 등)
- 직접수령 희망 시 ‘직접수령’란에, 4대 사회보험료 대납 희망시 ‘대납’란에 √ 표시를 합니다.
(건설업 및 별목업은 직접수령만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일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연속 3개월 30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 중인 근로자는 계속 지원됩니다.(최대 29인까지 지원 가능)
-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지급됩니다.

처리절차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일용근로자 별도 작성)

[illegible]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본사항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공동사업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1. 상기 본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원요건 해당여부 판단을 위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수집정보 활용
- 임금체불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급부 ·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 · 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금액)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년 월 일

신청인(공동사업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